

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확인 서류

- 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2022.09.3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.
- ※ 상기 서류 외 사전당첨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사전당첨자 자격요건 서약서	본인	■ 당사 현장접수처 비치, 무주택 입증서류 (사전당첨자 자격요건 서약서로 대체)
	○		신분증	본인	■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(전자여권 제외) 등 ※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본인	■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본인	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,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■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 (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■ 성명, 주민등록번호 (세대원 포함), “상세”로 발급 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)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에 공급받으려는 경우 - 주민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까지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■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■ 공급신청자 본인이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필수 제출 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“상세”로 발급)
	○		복무확인서	본인	■ 10년 이상 장기복무근원이 기타 지역(수도권)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(군 복무기간 명시)
노부모 부양 관련 서류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피부양 직계존속	■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(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 [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]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■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위한 필수 제출 (성명, 주민등록번호 (세대원 포함) 뒷자리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)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피부양 직계존속	■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위한 필수 제출 -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내국인 직계존속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- 주민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■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필수 제출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 / 자녀	■ 본인 : 만 30세 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■ 자녀 :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피부양 직계비속	■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[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]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피부양 직계비속	■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주민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※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아래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에서 제외 - 만 30세 미만 :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- 만 30세 이상 :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
해외 근무자 (단신 부임) 증서 서류	○		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	본인	■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에 한함) -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 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, 파견 및 출장명령서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■ 근로자는 아니나, 업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(※아래사항 반드시 제출)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	■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-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,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상 미성년 자녀 모두 제출 - 주민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※ 공급신청자의 해외 체류중인 기간 내 세대원의 동일 국가 체류여부 확인을 위하여 여권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
	○	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본인 및 세대원	■ 여권 불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당첨자(청약신청자)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국의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
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	○		무주택 소명서류	해당 주택	■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가족대장등본 포함) ■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절거예정증명서 ■ 소형·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, 건축물관리대장,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) ■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당첨사실 소명서류	본인	■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※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. -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(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), ‘본인 발급분’에 한함. (단,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)
	○		위임장	본인	■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당사 현장접수처에 비치
	○		대리인 신분증, 인장	대리인	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(전자여권 제외) 등 ※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